



2021 - 202

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대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22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○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		(㎡)		
	4759	15,945	2023. 1. 25. (: 2018. 1. 26.)	-

○ 참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(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)으로부터 2년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.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2) 및 영등포구 주택과(☎02-2670-3670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21 - 203

() () ()
()

서울특별시고시 제46호(1974.04.18.)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최초 결정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78호(2020.09.10.)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, 성북구 안암동 5가 1-2일대의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22일

서울특별시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으로, 성북구 안암동 5가 1-2일대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의 확충과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개발을 위한 정운오IT·교양관 및 제2학생회관 등 건축계획(변경)을 반영한 세부시설 조성계획(기본계획)을 결정(변경) 하고자 함

2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 조서[변경 없음]

				(㎡)				[()]
				640,850	-	640,850	1974.04.18. (46)	2015.08.20 (247)
	()	1	5가 1-2	213,733	-	213,733		
		2	5가 126-1	268,544	-	268,544		
		3	5가 126-16	158,573	-	158,573		